

수원지방법원 2023. 1. 31 선고 2022가단5436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12. 13.

판 결 선 고 2023. 1. 31.

주 문

-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/8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체결된 2022. 1. 24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채권

- 1) E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는 2018. 2. 14. D에게 5,000,000원을 계약만료일 2021. 2. 14.,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24%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
- 2) 소외 회사는 2020. 10. 26.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양수금 채권'이라 한다).
- 3)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. 11. 24. 'D는 원고에게 6,873,549원 및 그 중 5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6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2021. 12. 16. 확정되었다(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소360828호).

나.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

- 1) F는 1981. 6. 16. 경기 화성군 G 전 2,354㎡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, 위 토지는 2005. 6. 8. G 전 1,032㎡, H 전 496㎡, I 전 413㎡, J 전 413㎡로 분할되었다(이하 분할 전의 위 G 전 2,354㎡를 '이 사건 분할 전 토지', 분할 후 위 G 전 1,032㎡를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.
- 2) F는 2008. 2. 26. 사망하였고, 상속인으로는 처인 K와 자녀들인 L, D, 피고, M가 있는데, F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/2 지분을 K와 L가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고, K와 L는 2008. 3. 11. 이 사건 토지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- 3) K는 2021. 7. 23. 사망하였고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,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L와 D, 피고, M가 있다.
- 4)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2. 1. 24.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1/2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분할협의'라 한다)를 하였고, 피고는 2022. 1. 25. 이 사건 토지 중 K 소유의 1/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D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1/8 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, 원고에 대한 위 채무, N 등에 대하여 합계 129,843,00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, 을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원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.

나. 사해행위 여부

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,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.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,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·입증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).

한편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(대법원 2014. 11. 25. 자 2012스156, 157 결정 등 참조).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

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,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룰 수 없다(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다8334 판결,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/2 지분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합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, 이 사건 분할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 D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피고는 F가 1998. 3. 11. D에게 전세자금 등 23,000,000원, 2001. 12. 8. 사업자금 13,000,000원, 2002. 4. 2. 사업자금 34,000,000원을 증여하였고,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여 D의 O에 대한 채무 50,000,000원을 변제하였는바, D는 특별수익자로서 F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고, 피고와 처가 망인 생전에 망인의 병원비 등을 부담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/2 지분을 단독상속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.

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 F가 생전에 D에게 약 120,000,000원을 증여하였더라도 이는 F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고,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L가 2008. 3. 11. 이 사건 토지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1/2 지분은 망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, 피고가 주장하는 F의 생전증여는 망인의 재산상속에 있어 D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.

또한 을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처 P가 203년 3월부터 2022년 8월경까지 망인의 수술비, 요양비 등으로 약 37,000,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이 사건에서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인 L와 D, 피고, M 사이에서 피고가 망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가정법원이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, 이 사건 분할합의서(갑 제9호증)에는 이 사건 토지 중 1/2

지분을 피고가 소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기여분에 관한 언급이 없고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러한 기여분 협의를 기초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,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피고의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(망인의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 등 피고가 주장하는 기여분 등을 반영한 피고와 D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를 것을 뒷받침할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)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다. 사해의사의 존부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).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).

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앞서 든 사정 및 망인의 유지에 따른 것이고, 피고는 D의 채무 등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로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망인의 동생으로서 혈족관계에 있는 점, D가 이 사건 토지 중 1/8의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반대급부 없이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라.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

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D의 상속지분인 1/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황지원